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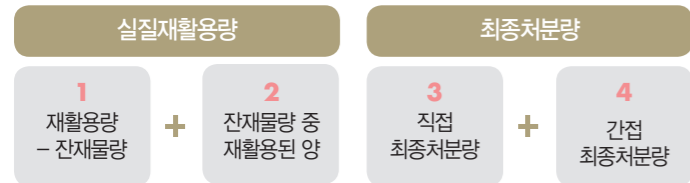
자원순환성과관리 제도소개



자원순환 개념 및 성과지표

자원순환 개념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물질흐름에 따른 자원순환성과 관리



자원순환 성과지표

최종처분율 (%) = $\frac{\text{최종처분량(톤)}}{\text{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times 100$

순환이용률 (%) = $\frac{\text{실질재활용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text{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times 100$



자원순환성과관리 콜센터 | TEL 032-590-5077~9

지역별 안내

| 지역 구분 | 전화번호 | 한국환경공단 담당처 |
|---|----------------|--------------------|
| 제도 총괄 | 032-590-5071~6 | 본사 자원순환성과팀 |
| 서울, 인천 | 02-3153-0507 |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팀 |
| 고양,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양주, 파주, 연천, 안산, 화성 | | |
| 과천, 광주,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평택, 하남, 이천, 여주, 양평,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 031-590-0613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팀 |
| 강원도 | 033-240-9535 | 강원지사 자원순환지원팀 |
| 부산, 울산, 경상남도 | 051-366-3711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팀 |
| 대구, 경상북도 | 053-580-7502 |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팀 |
| 대전, 세종, 충청남도 | 042-939-2317 | 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팀 |
| 충청북도 | 043-219-6430 |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 |
| 광주, 전라남도 | 062-949-0755 | 호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팀 |
| 전라북도 | 063-279-0803 | 전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 |
| 제주특별자치도 | 064-725-6546 |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팀 |



www.recycling-info.or.kr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란?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체계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 국내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10년 단위로 설정·관리

- 순환이용률 ↑ / 최종처분율 ↓
- 순환자원 이용 확대를 통한 천연자원 투입 최소화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
- 1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
- 2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자원순환 여건 및 국가자원순환 목표 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정부로부터 설정·부여받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노력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업종별·사업장별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자원 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목표달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추진절차



성과관리 대상자



|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단, 건설폐기물은 제외)

T-2년도 성과관리 대상자 공고(6월)



한국환경공단

대상 사업자 조사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기준 업종 및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자 선정·공고(6월말)

- 공단홈페이지 및 '자원순환정보 시스템' 등에 공고 및 문서 통지

사업자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과태료 부과 대상 (「자원순환기본법」 제29조 제1항)

성과관리대상자가 다음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실적자료
-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
-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서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위한 출입 및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50~100만원 부과

T-1년도

실적자료 제출 → 자원순환 목표설정
· 부여 → 이행계획 작성·제출



1 | 실적자료제출|

사업자(3월말)

- 목표설정을 위한 실적자료(최근 3개년도) 제출

한국환경공단(7월말)

- 실적자료 사실여부 확인 : 실적자료 오류 확인 시 보완 요청 → 사업자
- 목표설정 계획(안) 마련 → 환경부 보고

2 | 목표 협의 / 목표 설정 및 부여 |

환경부

- 자원순환목표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사업자 단체)

한국환경공단(9월말)

- 사업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부여·통보

사업자(이의신청)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3 | 이행계획 작성 및 제출 |

사업자(12월말)

자원순환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제출

- 자원순환 목표와 이행 방법
- 생산실비 현황 및 예상가동률
- 폐기물 감량계획 등

한국환경공단

이행계획 검토·확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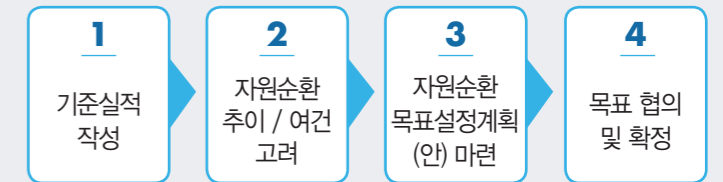
-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수정·보완 요청

목표설정 기본원칙/설정절차

| 기본원칙 |

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는 최종적으로 국가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

| 설정절차 |



| 기준실적 |

-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한 최근 3개년도 연평균 자원순환 실적
- 다음연도 자원순환 목표는 기준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적용

T년도

목표이행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자원순환 성과지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의 목표 달성을 위한 폐기물 원천 감량과 자원순환 노력 이행

T+1년도

이행실적 제출 및 평가

사업자(3월말)

- 목표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한국환경공단(5월말)

- 이행실적 검토/확인 : 목표 대비 달성도 등
- 이행실적 평가 결과 보고

환경부

- 자원순환 목표 이행 명령 등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우수

- 우수 성과관리 대상자 선정
- 재정적·기술적 우선 지원
- 정부포상시 우선적용 등

미흡

- 목표 미달성 및 미이행 등에 관한 조치
- 목표 미달성 시 다음 연도에 가산 적용 및 기술진단·지도
- 실적자료, 이행계획, 이행실적 제출 등 미이행시 명단공개